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6. 9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·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재활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, 재활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를 삭제(안 제38조, 제3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22. ~ 11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서류”를 “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총 6개월 이내로 한다.

(이하 삭제)

제39조제4항 본문 중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한 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대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) ① (생략)	제38조(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재활운동기관(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)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<u>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</u> ----- -----.
1. <u>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</u>	<삭 제>
2. <u>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</u>	<삭 제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공무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</u>	④ <u>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총 6개월 이내로 한다.</u>

<u>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</u> 제39조(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<u>3개월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 ⑤ (생략)	제39조(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6개월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1 - 8135